

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개월
신청인	기관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	기관·단체 설립일
	소재지	전화번호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3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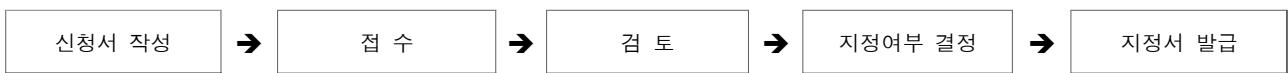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. 사업계획서 4. 시설·장비 보유현황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산림청